# (농림축산식품부)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



## 관리 요령

[시행 2021. 12. 31.] [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1-102호, 2021. 12. 31., 일부개정]

농림축산식품부(농업통상과), 044-201-2057

### 제1부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요령은「양곡관리법」제12조·제13조,「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15조,「축산법」 제30조·제31조,「종자산업법」제42조,「사료관리법」제6조,「인삼산업법」제20조에 따라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」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의 배정방식, 양허관 세추천 및 사후관리 등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#### 제2조(정의)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- 1. "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관세율"(이하 "양허관세"라 한다)이란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」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을 말한다.
- 2. "양허관세추천기관"이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말하며, "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"이라 함은 본 요령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대행하여 시장접근물량 적용 양허관세추천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.
- 3. "지정기관배정"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.
- 4. "수입권공매"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5. "실수요자배정"이란 선착순으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, 일정요건을 구비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.
- 6. "양허관세적용물량"이란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따른 양허관세규정」에서 정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 허세율로 수입되는 농축산물을 말한다.

#### 제2부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

- **제3조(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, 배정방식 및 추천기관)** ① 양허관세추천 대상 품목,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, 양 허관세추천기관 또는 양허관세추천대행기관(이하 "추천대행기관"이라 한다)은 별표 1과 같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허관세적용물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방식 중 지정기관배정 또는 수입권공매의 적용을 받는 물량에 대하여 물량배정방식을 달리하여 운영할수 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4조(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)** ① 양허관세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추천신청서에 해당품목의 사용용도를 명기하여야 한다.
  - ②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사용용도는 일반내수용, 외화획득용원료, 외화획득용제품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반내수용의 사용용도를 더욱 세분하여 표기하도록 할 수 있다.
  - ③ 양허관세추천을 받은 품목을 수입, 판매, 사용하는 자는 제8조에 따른 추천서에 명기된 용도에 한하여 수입, 판매, 사용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용도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, 추천대행기관을 경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.
  - ④ 제3항 전단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일반내수용을 외화획득 원료로 사용 용도를 변경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⑤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은 자가 제2항·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제86조 및 관련법률에 의한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 - ⑥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 추천을 받아 수입된 품목이 제8조에 따른 추천서 용도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 또는 이 요령에서 사후관리기관을 달리 지정하거나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, 단체, 협회 등에 사후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, 단체, 협회 등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수립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수립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배정방식과 추천대행기관별로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하고 추천대행기관에 시달하여야 하며,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의 과거 수입실적, 가공시설규모,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성상 및 가공정도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을 정할 수 있다.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연도 통관사용을 조건으로 추천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미리 추천하게 할 수 있다.
  -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을 양허관세 신청 개시 90일 이전에 공표하여야한다.
- **제6조(양허관세 추천물량 및 배분기한)** ① 양허관세 추천물량은 「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」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및 동 규정 제7조에 의해 증량된 수량의 범위 내로 한다.
  - ② 추천대행기관은 필요 시 1회 추천한도물량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③ 양허관세 추천은 경제적 수량 단위로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④ 양허관세 물량 배분기한은 배분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로 한다.
- 제7조(양허관세 추천신청) 양허관세 추천을 신청하는 자는 사전에 추천대행기관으로부터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을 받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천대행기관에 제출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  - 1.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「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신청서」1부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2. 수입권공매 주관기관과 추천대행기관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이 발행한 낙찰증명서 1부
- 3.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제8조(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의 발급) ① 추천대행기관은 양허관세의 추천신청이 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2일 이내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』(이하 제2부에서 "추천서"라 한다)를 발급(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)한다.
- 제9조(추천서의 유효기간 및 추천품목의 신고기한)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교부일로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에 서 추천대행기관이 정한다. 다만,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 12월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- ②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』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교부한다.
  - ④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 통관물량을 미리 추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러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 아야 한다.
  - ⑤ 양허관세 추천품목의 수입신고기한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연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제10조(추천물량의 분할) ① 추천서를 교부 받은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기존의 추천수량을 분할하여 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수량을 분할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수량 분할신청서』에 당초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초의 추천서와 교환하여 분할된 추천서를 교부한다.
- 제11조(추천서의 반납 등) ① 양허관세의 적용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.
  - 1. 추천수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
  - 2.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
  - 3. 그 밖에 추천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
  - ②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수량 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수량의 수입을 포기할 경우에는 이 사실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  - ③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생된 양허관세 추천잔량에 대하여 해당 연도 내에 기존 신청자 또는 신규 신청자에게 추가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12조(보고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양허관세 추천실적, 통관실적, 공매내역 및 미소진사유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일시, 공매대상품목, 공매조건 등 입찰공고내역을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 보고하고, 매 공매시마다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수입제한품목에 대한 특례) ① 별표 1의 품목 구분란에 『미곡』으로 표시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「양곡관리법」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- ②「대외무역법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에 수입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을 수입하는 자는 이 요령에 따른 양허관세 추천 외에 수출입공고의 품목별 수입요령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13조의2(증량된 물량의 배정방식) ① 양허관세적용물량 중「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」제7조에 의해 증량된 물량에 대하여는 제5조의 양허관세 추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게기된 배정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별도로 정한 사항 외에 증량물량의 수입추천 및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요령을 적용한다. 제3부 지정기관배정
  - 제14조(수입창구) 별표 1에 따라『지정기관배정』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  - 1. 농림축산식품부 : 쌀
    - 2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: 양파, 마늘, 고추, 녹두 팥, 생강, 메밀, 대두, 참깨, 인삼, 감자
  - 제15조(용도의 지정) 제14조에 의해 지정기관배정방식으로 수입된 품목을 국내에 판매하는 기관은 판매 시 특정용 도를 지정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용도가 지정된 품목을 구입・사용하는 자는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.

**제16조** <삭제 '95.8.31>

제4부 수입권 공매

- **제17조(수입권공매 주관기관)** ① 별표 1에 따라「수입권공매」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추천대행기관과 수입권공 매주관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 - ② 수입권공매방식으로 배정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공매를 주관하며, 필요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이를 변경 지정할 수 있다.
  - 1.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: 참기름과 그 분획물, 참깨, 생강, 낙화생, 메밀, 감자, 양파, 인삼, 마늘, 고추, 대두, 녹 두 • 팥
  - 2.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: 천연꿀
  - 3. 산림조합중앙회: 밤
  - ③ 해당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이 아닌 공매주관기관은 매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별 낙찰물량을 추천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7조의2(배정기준) 추천대행기관은 제18조제5항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주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 받은 자에 한하여 배정한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제18조(수입권공매의 관리) ① 수입권공매는 공개경쟁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공매대상품목, 입찰참가자격, 입찰방법, 공매조건, 낙찰방법, 입찰보증금, 수입이행보증금 및 낙찰대금의 납부, 이행각서의 징구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별도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수입권공매를 통하여 낙찰 받은 자는 그 수입권을 타인에게 전매하지 못하며 입찰당시 정하여진 수입이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입하여야 한다.
- ④ 낙찰받은 자가 공매 시 설정한 수입이행기간 내에 낙찰물량 전량을 수입하지 않을 경우 제2항의 수입이행보 증금은 관련기금에 귀속된다. 다만, 귀책사유 없이 수입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및 수입 미이행 물량이 운송 중 감 모 등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소량인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⑤ 추천대행기관은 재공매를 통해서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또는 낙찰 받은 자가 수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품목의 지정기관, 생산자단체 또는 추천대행기관이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배정하거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
- ⑥ 담합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입찰참가자(낙찰 받지 못한 담합가담자도 포함한다)에 대해서는 낙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고, 입찰보증금은 관련기금으로 귀속되며, 낙찰일로부터 6개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에서 이 요령에서 규정한 모든 품목의 수입권공매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.
-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품목별로 수입권공매 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

### **제19조** <삭제 '95.8.31>

제5부 실수요자배정

- **제20조(배정요령의 공고)** 추천대행기관은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배정대상자, 배정 신청기간, 배정기준, 신청서류 등 구체적 배정요령에 대하여 별도로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20조의2(배정기준) ① 별표 1에 따라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수입하는 품목의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은 추천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추천대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,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할수 있다.
  - ③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결과에 따라 작성된 대상 자별 "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"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을 추천하여야 한다.
- 제20조의3(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) ① 추천대행기관은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배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추천대상자별로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연간 또는 기간별 "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"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추천대행기관은 신청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자별 "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계획"(이하"배정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에 따라 양허관세적용물량 배정신청을 한 자가 신청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입이불가능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청한 추천대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

④ 추천대행기관은 배정신청자의 추천신청, 수입실적 등에 따라 이미 수립된 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. 다만, 이러한 경우 조정내역을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부 외화획득용원료의 양허관세추천

- 제21조(추천물량범위) ①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양허관세 추천계획에 외화획득용 원료의 양허관세 추천물량을 반영하며 외화획득용 원료의 추천요구가 있을 경우 추천계획 범위 내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 없이 내수용을 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후보고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원료성분의 확인이 어렵거나 제5조에 의해 매년도 작성되는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외화획득용원료 중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바에 따라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2조(추천대상자)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으로 제31조에 따라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.
  - 1. "취소불능화환 신용장"을 수취한 자와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추심결재방법(D/A, D/P)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자 및 계약서에 의하여 수출대금을 미리 영수한 자 또는 상기 결제방법에 의한 내국 신용장을 수취한 자
  - 2. 제1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수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외화획득용원료 가공수출 사업승인을 받은 자
  - 3. 위 각호의 자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자
- 제23조(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신청) 양허관세로 외화획득용원료를 수입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(축산물은 제1호, 제4호 및 제5호에 한하되, 수탁가공수출의 경우 제1호, 제3호 및 제5호)를 구비하여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비축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원료의 기준소요량이 고시된 품목에 한하되, 이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를 생략하고, 추천대행기관에 의한 가공수출실적과 소요량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. 비축수입의 경우 원료의 소요량 50% 범위 내에서 신용장 수취이전이라도 미리 추천할 수 있다.
  - 1.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「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」1부
  - 2. (삭제 '99.12.21)
  - 3. 제22조제1호의 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(비축수입의 경우는 제외)
  - 4. 소요량증명서 1부(누에고치는 제외, 자율소요량 계산서 작성업체는 소요량 계산서)
  - 5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(허가)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
  - 6. 관련시설증명서, 수입대행계약서 등(필요한 경우에 한함) 1부
- 제24조(양허관세 추천한도) ① 추천대행기관이 추천을 할 수 있는 한도는 소요량증명서 발급기관이 발급 또는 고시한 외화획득용 품목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수량 이내로 한다. 다만,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특례법」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소요량

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

계산서를 심사하여 추천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품목의 국내수급동향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 이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실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### 제25조(삭제 '98.7.8)

- 제26조(외화획득 이행기간) 외화획득용원료로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원료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(누에고 치는 1년)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외화획득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. 다만, 품목의 특성상 원료를 미리 비축가공하여 연중 수출하여야 할 가공품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대행기관이 6개월 범위 안에서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- 제27조(잔량처분) ① 제26조에 따라 외화획득행위(이하 '대응수출'이라 한다)를 하고 남은 원료, 부산물 및 제품은 추천대행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하여서는 안된다. 다만, 잔량이 총 수입량의 3%이내로서 수입가격으로 미화 2,000불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- ②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은 식용으로 공급할 수 없다.

제28조(사후관리) ① 추천대행기관은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제3장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

② 외화획득용 원료로 추천을 받은 자가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제26조에서 정한 해당 만기일 경과 후 20일까지 추천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화획득 이행신고가 없는 경우 추천대행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고, 동시에 외화획득 미이행에 대하여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29조(수출이행신고) ① 외화획득용원료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대응수출 이행이 완료되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추 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소요량증명서
- 2. 수출신고필증
- 3. 그 밖에 추천대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② 추천대행기관은 전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외화획득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」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자율소요량계산서 작성업체로서 양허관세 추천 신청시 추천대행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세환급실적을 기준으로 수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
- 제30조(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의 보고 또는 통보)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원료의 수입 및 대응수출 이행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『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』 별표 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

- **제31조(제재)**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2년의 범위안에서 외화획득용 양허관세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1. 제26조에 의한 외화획득 이행기간 내에 대응수출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
  - 2.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응수출을 하고 남은 원료·부산물 및 제품을 추천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유출한 경우
  - 3.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축산물 가공 후에 발생한 부산물을 식용으로 제공한 경우
  - 4. 제28조에 의한 추천대행기관이 행하는 사후관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

#### 제32조(삭제 '99.12.21)

- 제33조(다른 법령 및 규정의 적용) ① 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외무역법」, 「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」, 「양곡관리법」 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- ② 이 요령에 의해 외화획득용원료로 추천된 물품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절차, 보고양식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『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』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.
  -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「외화획득용원료 수입 및 사후관리요령」의 규정에 따라 외화획득용원료로 이미 추천된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대행기관이 별도 공고하는 바에 따라 본 요령 제6부에서 정한 일부규정의 시행을 면제하고 제8조에 의한 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서』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7부 외화획득용제품의 양허관세추천

- 제34조(추천물량) ① 추천대행기관은 외화획득용제품에 대하여 과거 수입실적, 최근 수요량 등을 감안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추천계획물량 범위 내에서 양허관세추천을 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추천대행기관이 양허관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추천대행기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양허관세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35조(양허관세 추천절차) ① 양허관세를 적용 받아 외화획득용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「대외무역관리규정」 제3장제4절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용 제품의 사후관리기관으로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「시장접근물량 양 허관세적용요청 외화획득용제품확인서」를 발급받아 추천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② 추천대행기관은 제5조에 의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8조에 의한 『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』를 발급한다.
- **제36조(다른법령 및 규정의 적용)** 외화획득용제품의 수입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외무역법」등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8부 보 칙

제37조(공고의 승인) ① 이 요령에 의한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양허관세 추천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 받는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 공매 주관기관의 공고내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 개정을 명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정명령을 받은 추천대행기관 및 수입권공매 주관기관은 20일 이내에 이를 개정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37조의2(이행상황조사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추천대행기관은 이 요령의 규정을 적용받는 추천대행기관, 수입자(수입예정자를 포함한다), 판매자, 사용자에 대하여 이 요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**제38조(제재)** ① 추천대행기관은 추천을 받은 자가 제4조 제2항 및 제3항, 제18조 제3항에서 제6항까지, 제31조 제 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② (삭제 2010. 12. 31)
- 제39조(재검토기한)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훈령・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 <제2021-102호,2021.12.31.>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